

교육전문대학원 논문대체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13. 2. 21	규정 제364호
1차개정	2013. 4. 15	규정 제390호
2차개정	2013. 6. 26	규정 제445호
3차개정	2016. 6. 24	규정 제582호
4차개정	2017. 12. 7	규정 제614호
5차개정	2019. 12. 16	규정 제6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제18조 및 「학위수여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논문대체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정의) ① 학위논문대체과정(이하 “대체 과정”이라 한다)이란 논문대체교과목 이수와 학위논문대체보고서 제출로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석사학위(복수 학위, 공동 학위 포함)를 수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대체과정교과목(이하 “대체 교과목”이라 한다)이란 대체 과정 이수를 위하여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제17조에 따른 수료 이후에 추가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③ 대체과정보고서(이하 ‘대체 보고서’)란 해당 전공의 전문성을 발휘한 연구보고, 현장 활동 보고 등의 프로젝트 보고서 또는 해당 전공의 특성을 반영한 발표회, 전시회, 전국 수준의 수상, 교수-학습 자료·소프트웨어 제작, 학술 논문 발표, 저서 출판, 전문 자격 획득 등에 관한 실적 보고서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전공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대체 과정 신청) ① 대체 과정은 석사과정 3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체 과정 신청자는 「학위수여규정」 제6조의 논문계획서 제출 및 논문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4조(대체 보고서 계획서 제출) 대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 과정 이수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대체 보고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교수 선정) ①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대체 보고서의 내용, 전공 교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체 보고서 심사 자료 제출) ① 대체 보고서 심사를 원하는 자는 상반기는 5월말, 하반기는 11월말까지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보고서 심사원을 제출하고, 심사 자료를 해당 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체 보고서 심사를 원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체 보고서 심사) ① 대체 보고서는 논문대체보고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학원의 전공별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프로젝트 보고서의 연구 주제와 연구 내용, 연구 방법의 타당성, 표현의 명료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실적 보고서의 전공 관련성, 공인성, 가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④ 심사 결과의 판정은 P/F로 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대체 보고서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심사 종료 즉시 심사 결과를 상반기는 7월 초, 하반기는 익년도 1월 초까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대체 보고서 최종본 제출) ① 대체 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대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 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 보고서의 작성 및 제본은 학위논문 양식을 준용한다.

③ 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공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교육전문대학원 프로젝트 보고서 운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4.15.>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 2017.1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제3조는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